

소형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무화 시행



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☎ 3146-4845 Fax. 3146-4889

● 소형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무화란?

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(물탱크)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제도

● 소형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무화 근거

「수도법」 제33조 제5항,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및 동 시행규칙

● 소형저수조(물탱크) 청소의무화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

2019년 하반기에 소형저수조(물탱크) 청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



● 종 전

-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

● 변경

- 1년 2회이상 청소 의무화
-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



● 누가 대상이 되나요?

저수조(물탱크)가 설치된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입니다.

● 어떻게 청소하면 되나요?

관할구청(환경과 등)에 신고 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하시면 됩니다.

● 청소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?

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저수조사진(청소 전, 중, 후)과 정보를 등록하시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●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법령에 의거하여 급수를 정지하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
2016.7.1.부터 소형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.

●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아요!

직결급수 공사를 하시면 저수조 청소관리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저수조 청소비용 및 전기료 점감이 가능하며 아리수를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동봉된 '청소대상 제외요청서'를 작성하셔서 FAX를 보내주세요.